

#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문교사회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9. 11. 5
- 나. 제안자 : 유천호·박창규·오홍철·이명숙·정종섭·김소림 의원 외 4인
- 다. 회부일자 : 2009. 11. 5
- 라. 상정일자 : 2009. 12. 18(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유천호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훈맹정음인 한글점자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평생 몸바치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문화사업과 유업을 기리기 위한 활동 등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선생의 위업을 높이 찬양하고 그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원근거 마련

##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장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안 취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헌신한 송암(松庵)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천호·박창규·오홍철·이명숙·정종섭·김소림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임.

###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현황

-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인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는 일제의 우리문화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하고,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평생 헌신한 인천 출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2009년 9월 29일 市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며, 강화군민 중심으로 124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음.
- 동 선양회는 송암 선생의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과 유물수집 전시,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임.

## □ 주요 내용

### ○ 조례안의 제명

-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은 제명에서도 나타나듯, 송암 선생의 애맹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 사업을 추진할 단체의 지원에 있음. 송암 선생의 삶의 흔적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품을 수집·보존함으로써 고인의 숭고한 얼을 계승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는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인천지역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선양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는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2010년도 본예산에 선생의 선양사업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볼 때, 선양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 또한, 조례안의 입안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조례안의 내용이 공평성 및 형평성, 보편성 등을 확보하는지의 여부인데, 송암 박두성 선생의 선양사업이 아닌, 이를 추진하는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향후 他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 등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제4조)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송암 선생을 기리는 문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수집 전시,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현행 「지방재정법」 1)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3) 에서도 공익사업 또는 市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3) §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송암 박두성 선생 약력

	○ 생년월일 : 1988. 4. 26
	○ 출 생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 가족관계 : 9남매 중 맏이
주요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1. : 이동휘(독립운동가)로부터 송암 호 받음</li> <li>○ 1913. 1: 제생원 맹아부 발령</li> <li>○ 1913. 8: 교과서(일본어점자) 출판(한국 최초 점자교과서)</li> <li>○ 1919. 3: 천자문 점역 제판 완성</li> <li>○ 1921. 3: 한글 3.2점식 점자 완성</li> <li>○ 1921. 3: 조선 맹아협회 사감 취임</li> <li>○ 1922. 4: 제생원 맹아부 사감 취임</li> <li>○ 1923. :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 조직, 훈맹정음 연구 시작</li> <li>○ 1926. 8: 조선어 점자연구회(보급회) 조직, 훈맹정음 창안</li> <li>○ 1926. 11: 훈맹정음 반포</li> <li>○ 1936. : 인천 영화학교 교장 부임</li> <li>○ 1940. : 조선맹아사업협회 조직, 점자통신교육 시행</li> <li>○ 1941. : 신약성서 점자원판 제작 완성 - 6.25때 손실</li> <li>○ 1945. : 인천 시각장애인 회람지 “촉불” 발간</li> <li>○ 1957. 12: 신·구약성서 점역 완성(전 24권)</li> <li>○ 1962. 8: 국민포창 수상</li> <li>○ 1963. 8: 서거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 안장)</li> <li>○ 1992. 10: 은관 문화훈장 추서</li> <li>○ 1997. 12: 한글점자를 시각장애인 문자로 고시</li> <li>○ 2002. : 2002.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li> </ul>

※ 출처 : 송암 박두성 기념관 홈페이지([www.ibusongam.or.kr](http://www.ibusongam.or.kr)) 자료 요약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의원
  -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라는 단체에 국한하여 지원하게 되면 광범위한 사업을 하지 못 할 수도 있음.

##### < 답 변 >

- 유천호 의원
  -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므로, 동 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함.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최병덕 의원

#### 6. 수정안 요지

-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 사업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u>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u></li> <li>4. <u>기타 선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u></li> </ol>	<p>제4조(지원대상)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제정안과 같음) (삭 제)</li> <li>3. (제정안 제4호와 같음)</li> </ol>

##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수집 전시
2.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